

##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이하( "이동 도서관"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, 관리) 이동 도서관의 설치, 관리는 새마을문고 중앙회남구지부 (이하"문고지부"라 한다) 회장에게 위탁한다.

제3조(사업) ① 이동 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
  2. 독서상담 및 자문
  3. 국민독서 진흥운동
  4.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홍보
  5. 기타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- ② 이동 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.

제4조 (운영위원회)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 (이하"운영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  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
2.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
3.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

제5조 (예산 및 결산) ① 이동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.

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 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 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문고지부 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직원임용)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 한다.

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1명과 운전원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.

③ 이동 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 한다.

제7조 (지도, 감독)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 도서관 설치,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, 감독 한다.

② 이동 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 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, 감독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